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28

발의연월일: 2024. 12. 2.

발 의 자:민홍철·문대림·손명수

맹성규 · 김문수 · 백혜련

정준호 · 김기표 · 한준호

민형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어 금융회사들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자료를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같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국방부장관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방위산업 기술 유출이나 무기체계, 방위산업 물자의 조달 등과 관련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에 국방부장 관을 추가하여 방위산업, 군수품 조달 관련 군사 범죄행위에 적시적이 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군사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제 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법률 제 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를 "금융감독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 또는 방위산업, 군수품 조달 관련 불법행위의 수사"로,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에"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장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장,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공) ① -----불법재산 ·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 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 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 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 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 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 --금융감독업무, 테러위험인물 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이하 에 대한 조사업무 또는 방위산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업, 군수품 조달 관련 불법행위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 수사----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 (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 다)를 검찰총장, 행정안전부장 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 한다. 이하 같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관세

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u>금</u> 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에 제공한다.

- 1. ~ 3. (생략)
- ②・③ (생 략)
- ④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장,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u>국가정보원장(이하</u> "검찰총장등"이라 한다)은 특정 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 항제3호에 규정된 정보의 제공 을 요구할 수 있다.

⑤ ~ ⑫ (생 략)

금융위원회, 국가
정보원장 또는 국방부장관에
<u>.</u>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4
국가정보원
<u>장, 국방부장관</u>
· ⑤ ~ ⑫ (현행과 같음)